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이행강제금 관련 조문 정비〉

■ 박성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85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이행강제금 관련 조문 정비 ..... | 2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성민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6.
3. 회부연월일 : 2025. 3. 7.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 Ⅲ. 검토의견

#### 1. 이행강제금 관련 조문 정비

개정안은 대기업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내용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과 현행법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 현행                                                                                     | 개정안                                                                               |
|----------------------------------------------------------------------------------------|-----------------------------------------------------------------------------------|
| 제10조(이행강제금) ① · ② (생략)                                                                 | 제10조(이행강제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
| ③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단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u> | ③ <u>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④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u>                                    |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u> |
| ⑤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하고, 이</u>              | <삭 제>                                                                             |

|                                                                                                                                                                                                                                       |                           |
|---------------------------------------------------------------------------------------------------------------------------------------------------------------------------------------------------------------------------------------|---------------------------|
| <p><u>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이</u><br/> <u>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u><br/> <u>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u><br/> <u>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u><br/> <u>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u></p> <p><u>⑥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부과·</u><br/> <u>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u><br/> <u>으로 정한다.</u></p> | <p><u>&lt;삭 제&gt;</u></p> |
|---------------------------------------------------------------------------------------------------------------------------------------------------------------------------------------------------------------------------------------|---------------------------|

먼저, 현행법 제10조제3항, 제4항, 제5항은 대기업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단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고(제3항),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제4항)하며, 이행강제금 부과 시 문서주의 원칙 등(제5항)을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음<sup>1)</sup>.

그런데 현행법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그 취지 및 내용이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1) 제10조(이행강제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이행강제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정을 명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단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기본법」 상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를 규정할 경우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요건

3. 부과 금액

4. 부과 금액 산정기준

5.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이에 개정안은 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기본법으로서의 「행정기본법」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법제 정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유사한 행정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한다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맞춰

개정·정비하는 것에는 동의하는 입장임. 다만, 법률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인용조항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으로 개정안 부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개정안 부칙             | 수정안                          |
|--------------------|------------------------------|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 문 의 처         |
| 02) 6788-5463 |